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의무화 등〉

■ 남인순·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36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 남인순·김선민의원 대표발의(제2219436호)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의무화 등(안 제12조의2제1항 등) ..... | 2 |

## □ 남인순·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36호)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김선민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23.

3. 회 부 일 : 2026. 7. 2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의무 화 등(안 제12조의2제1항 등)

개정안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업무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 ③ (생략)                                                                                                                                |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u>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u> | ④ -----<br>-----<br>-----<br>-----<br>----제12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br>-----<br>-----<br>----- |
|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 설&gt;</p> <p>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생략)</p> <p>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p> | <p>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2조의5(수수료의 지급 등)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의2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심사평가원-----<br/>-----<br/>-----<br/>-----<br/>-----<br/>-----<br/>-----</p> |

| 현행                                                                                                                                                                                                                                                                                                                                                                                                                                                         | 개정안                                                                                                                                                                                                                                                                                                                                                       |
|------------------------------------------------------------------------------------------------------------------------------------------------------------------------------------------------------------------------------------------------------------------------------------------------------------------------------------------------------------------------------------------------------------------------------------------------------------|-----------------------------------------------------------------------------------------------------------------------------------------------------------------------------------------------------------------------------------------------------------------------------------------------------------------------------------------------------------|
| <p>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p> <p>③ ~ ⑦ (생략)</p> <p>⑧ 보험회사등, <u>전문심사기관</u>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u>전문심사기관</u>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p> | <p>-----</p> <p>-----</p> <p>-----</p> <p>-----.</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심사평가원</u>-----</p> <p>-----</p> <p>-----</p> <p>-----</p> <p>-----</p> <p>-----</p> <p>-----</p> <p>-----</p> <p>-----.</p> <p>⑨ <u>심사평가원</u>-----</p> <p>-----</p> <p>-----</p> <p>-----</p> <p>-----</p> <p>-----</p> <p>-----</p> <p>-----.</p> <p>⑩ -----</p> |

| 현행                                                                                                                                                                                                                                                                                                                                                                                                                                              | 개정안                                                                                                                                                                                                                                                                                                                                                                                                                      |
|-------------------------------------------------------------------------------------------------------------------------------------------------------------------------------------------------------------------------------------------------------------------------------------------------------------------------------------------------------------------------------------------------------------------------------------------------|--------------------------------------------------------------------------------------------------------------------------------------------------------------------------------------------------------------------------------------------------------------------------------------------------------------------------------------------------------------------------------------------------------------------------|
| <p>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u>전문심사기관</u>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p> <p>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 ② (생략)</p> <p>③ <u>전문심사기관</u>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p> <p>④ ~ ⑥ (생략)</p> <p>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u>전문심사기관</u>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u>전문심사기관</u>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 <p>-----</p> <p>-----</p> <p>-----<u>심사평가원</u>-----</p> <p>-----</p> <p>-----.</p> <p>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심사평가원</u>-----</p> <p>-----</p> <p>-----</p> <p>-----</p> <p>-----</p> <p>-----</p> <p>-----.</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2(자료의 제공) -----</p> <p>-----</p> <p>-----<u>심사평가원</u>-----</p> <p>-----</p> <p>-----.</p> <p>----<u>심사평가원</u>-----</p> <p>-----</p> <p>--.</p> |

| 현행 | 개정안                          |
|----|------------------------------|
|    | 부칙                           |
|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제1항<sup>1)</sup>에 따르면,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임의로 위탁<sup>2)</sup>할 수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11조의2<sup>3)</sup>는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으로 정하고 있음.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sup>4)</sup>에 근거하

###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삭제 2015.6.22.>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현행법상 업무위탁은 임의 사항이나, 2013년부터 사실상 심사평가원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36조(수수료의 지급 등)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가 협의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수수료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여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 간 협의로 정해지며,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재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기준에 따라 산정됨<sup>5)</sup>.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 절차는 ① 의료기관의 진료 → ② 의료기관의 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 청구 → ③ 심사평가원의 심사 후 의료기관·보험회사등에 결과 통보 → ④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순으로 이루어짐.

③ 제2항에 따라 장기간 수수료가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정하여진 수수료는 심사평가원과 각각의 보험회사등 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⑤ 기타 수수료의 징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과 보험회사등의 장과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8조(진료수가의 산정방법)①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산정하되, 제4호 및 제5호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건강보험기준 중 상대가치점수, 금액이 정해진 행위·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3항제1호·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금액

2.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금액

3.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항목 및 제5조제5항에서 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항목의 점수 및 금액

4. 제1호 및 제3호에서 비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의 점수 및 금액

5.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각 호의 인정범위 중 금액으로 정한 항목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별도로 가산을 인정하는 항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별 의료기관이 제5조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금액 또는 실제 구입금액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산정한다.

최근 7년간(2019~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진료 인원은 연평균 0.9% 감소한 반면 지급액은 연평균 5.3% 증가하는 추세(2025년 2조 6백억원 지급)를 보이고 있어, 진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객관적·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 상해 정도별 치료비 추이 >

(단위 : 만명, 조원)

| 구분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연평균<br>증감율 |
|---------------|-----|-------|-------|-------|-------|-------|-------|-------|------------|
| 중상<br>(1~11)  | 인원  | 9.4   | 9.9   | 9.9   | 9.7   | 11.3  | 9.4   | 7.6   | △3.4%      |
|               | 지급액 | 0.51  | 0.54  | 0.54  | 0.56  | 0.59  | 0.56  | 0.55  | 1.3%       |
| 양방            | 인원  | 4.8   | 4.4   | 3.8   | 3.4   | 3.6   | 3.2   | 2.8   | △8.6%      |
|               | 지급액 | 0.27  | 0.26  | 0.24  | 0.22  | 0.22  | 0.20  | 0.21  | △4.7%      |
| 한방            | 인원  | 0.7   | 0.9   | 0.9   | 0.9   | 1.0   | 0.5   | 0.2   | △20.5%     |
|               | 지급액 | 0.01  | 0.01  | 0.01  | 0.01  | 0.02  | 0.01  | 0.00  | △9.6%      |
| 양·한방          | 인원  | 3.9   | 4.6   | 5.1   | 5.4   | 6.6   | 5.7   | 4.6   | 3.0%       |
|               | 지급액 | 0.22  | 0.26  | 0.29  | 0.32  | 0.35  | 0.35  | 0.34  | 7.2%       |
| 경상<br>(12~14) | 인원  | 155.4 | 146.0 | 141.6 | 145.0 | 145.8 | 148.8 | 148.8 | △0.7%      |
|               | 지급액 | 1.00  | 1.09  | 1.15  | 1.30  | 1.32  | 1.40  | 1.51  | 7.1%       |
| 양방            | 인원  | 70.0  | 55.9  | 46.9  | 42.6  | 41.5  | 41.5  | 40.1  | △8.9%      |
|               | 지급액 | 0.21  | 0.18  | 0.15  | 0.13  | 0.13  | 0.13  | 0.14  | △7.1%      |
| 한방            | 인원  | 45.2  | 51.1  | 57.7  | 65.1  | 68.7  | 71.8  | 73.4  | 8.4%       |
|               | 지급액 | 0.30  | 0.38  | 0.45  | 0.56  | 0.60  | 0.66  | 0.72  | 15.7%      |
| 양·한방<br>6)    | 인원  | 40.2  | 39.0  | 37.0  | 37.3  | 35.5  | 35.5  | 35.4  | △2.1%      |
|               | 지급액 | 0.49  | 0.53  | 0.55  | 0.61  | 0.59  | 0.61  | 0.65  | 5.1%       |
| 합계            | 인원  | 164.8 | 155.9 | 151.5 | 154.7 | 157.1 | 158.2 | 156.4 | △0.9%      |
|               | 지급액 | 1.51  | 1.63  | 1.69  | 1.85  | 1.90  | 1.97  | 2.06  | 5.3%       |

자료: 국토교통부

6) 양·한방 협진으로 이루어지는 한방병원 환자가 대부분이며, 양방과 한방에서 모두 진료받는 환자도 일부 포함

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는 심사평가원이 임의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이러한 업무위탁은 임의 사항으로 보험회사등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은 심사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예산과 조직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배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sup>7)</sup>.

또한 현행법상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진료보험진료수가가 진료수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심사할 뿐, 해당 진료가의 의학적으로 적정한 것인지는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진료수가 기준의 제정·변경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sup>8)</sup>(이하 “심의회”라 함)가 담당하고 있음.

한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보험회사등과 심사평가원 간의 개별적 협의에 맡겨져 있어, 수수료 산정기준이 법령이 아닌 당사자 간 협상에 결정됨에 따라 심사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

7) 국회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경상환자과잉진료어떻게해결할것인가?」, 『이슈와논점』, 2023.9.25.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심사 시 진료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며, 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기준 개발 권한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업무위탁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위탁 여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임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의무사항)                    |
| 심사 기준          | 진료수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사               | 진료수가기준 적합 여부 + 진료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           |
| 진료수가기준 개발      | 규정 없음(심의회가 제정·변경)                 | 심사평가원이 공정성·타당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 가능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 규정 없음                             | 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 가능      |
| 수수료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사평가원-보험회사등 간 협의로 결정 | 보험회사등의 지급의무 명문화, 산정기준·납부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개정안은 다음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첫째, 심사체계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현행법상 보험회사등의 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위탁은 임의 사항으로, 심사평가원은 위탁계약의 지속 여부와 수수료 수준이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안정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심사평가원이 심사 인력 확충 등 중장기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적절한 진료 보장과 보험회사·의료기관 간 분쟁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sup>9)</sup>,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둘째, 진료의 적정성 및 심사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현행법상 심사평가원의 심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진료수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한정되어 있어, 진료 자체의 의학적 필요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심사 시 진료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셋째, 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기준 개발을 통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업무를 수행

---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하는 심사평가원이 축적한 심사 데이터와 전문성이 기준 개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규모 심사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진료수가기준 개발은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심사의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심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기존 건강보험 심사 체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교통사고 부상의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심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현행 수수료 결정 방식은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 간의 협의에 의존하고 있어, 협상력의 차이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심사평가원이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보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보험회사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개정안은 수수료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및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임.

반면, 다음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자동차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등이 운영하는 사보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보험회사등이 위탁 여부를 자율적  
으로 결정하고 위탁 시 수수료 등 계약 조건을 심사평가원과 협의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위탁 여부에 관한 재량을 없애 위탁을 의무화하고,  
수수료 산정 기준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영  
역에서의 사적 자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참고로, 의료급  
여·보훈진료비 등 심사업무 위탁기관을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있음.

< 업무위탁 현황 비교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의료급여                                                      | 보훈진료비                                                          |
|-------|-----------------------------------------------------|-----------------------------------------------------------|----------------------------------------------------------------|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br>보장법」 제12조의2                             | 「의료급여법」 제33조 <sup>10)</sup>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br>제24조의3 <sup>11)</sup>                         |
| 위탁 근거 | 보험회사등은<br>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br>심사·조정 업무 등을<br>전문심사기관 위탁 가능 | 보장기관의 권한 중<br>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br>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br>전문기관 위탁 가능 | 공단은 국가가 부담하는<br>비용의 적정성 확인·심사·조정<br>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br>전문기관 위탁 가능 |
| 수탁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전문심사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br>전문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br>전문기관                                          |

둘째, ‘진료의 적정성’ 심사 추가가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 제12조의2제2항 후단은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함에 있어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진료의 적정성 판단은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기준 적합성 심사에 더하여 진료의 적정성까지 심사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이 위축되고 의학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개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10)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3(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시하고 있음.

셋째, 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기준 개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 제12조의2제4항은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회는 보험계·의료계·공익대표의 3자 균형 구조임<sup>12)</sup>.

심사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에 그 심사의 기준이 되는 진료수가기준 개발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심사자와 기준 설정자의 역할이 동일 기관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함.

넷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신설이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12조의4는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sup>13)</sup>에 따라 심사평가원 업무 전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만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 조직 체계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 간 기능 및 관할의 구분이 법령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심사기구의 중복 설치 및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섯째, 수수료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가 불명확함.

현행 고시는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장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분쟁 해결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개정안은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등 이

---

13)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①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체계의 안정성·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정책목표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민간 영역의 사적 자치,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1) 국토교통부

현행 법령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보험회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게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년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 중으로, 입법을 통해 업무위탁을 강제해야 할 제도적 필요성과 운영상 실익 등에 대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① 심사 시 “진료의 적정성”도 고려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용이 진료수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 외에 진료의 적정성까지 고려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해당하며, 이에, 의료기관은 진료 자율성 저하 및 의학적 판단 위축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② 진료수가기준 개발

현행 법령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로 1)자동차진료수가기준 제정·변경, 2)관련 조사 및 연구 수행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심의회 기능과 중복되며, 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수탁기관(심사평가원)에 그 기준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심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될 우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③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신설

현행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심사는 민간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그 방식까지 법령에 규정해야 할 입법적 실익이 부족함.

현행 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심사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납부절차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중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적 실익이 부족함. 아울러, 기존에 협의로 정하던 사항을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경우, 민간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 체계의 전문성·독립성 및 운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

으로 판단, 개정안에 동의함.

### 3) 손해보험협회

이미 하위법령에서 전문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규정하여 운영 중으로 상항 입법의 필요성이 없으며, 향후 심사 환경 변화 및 행정 수요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함. 아울러, 사인 간의 위탁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과 시장자유성을 과도하게 제한함.

수수료를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음.

### 4) 화물공제조합

특정 기관에 배타적인 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을 유발하고, 민간의 사적 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

수수료 강제 규정은 시장 경쟁이나 상호 견제 없이 민간의 재원을 확정적으로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 5) 렌터카공제조합

민간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의

우려도 있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기관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아울러, 공공 영역(의료급여, 보훈진료비 등)에서도 진료비용의 심사·조정 업무를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며, 수탁기관을 법률에서 특정하지 않는 반면, 민간 영역인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사인 간의 위탁계약을 특정 기관으로 강제하는 것은 민간의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가 필요함.

민간의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의 우려도 있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기관에 대하여 독점적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 6) 대한의사협회

진료수가기준을 직접 개발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심사위원회까지 설치·운영토록 하는 등 여러 기능을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시켜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저하와 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큼.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의 적합성 외에 진료의 적정성이라는 주관적 가치 판단까지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 위축과 이에 따른 환자의 적기 치료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진료수가 심사 수탁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기준 개발 권한을 부여하

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

## 7) 대한병원협회

진료수가기준의 제·개정은 동 법에 따라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으로 구성된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신뢰성 있게 개발·보완 중으로 현행 법령과 같이 해당 위원회가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기준까지 개발할 경우, 심사의 객관성·중립성 우려 및 편향적인 심사 기준 제한으로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가 있음.

## 8)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의 적합성 외에 진료의 적정성이라는 주관적 가치 판단까지 수행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 위축과 이에 따른 환자의 적기 치료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진료수가 심사 수탁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진료수가기준 개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

## 9) 대한한방병원협회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기준까지 개발할 경우, 심사의 객관성·중립성 우려 및 편향적인 심사 기준 제한으로 환자의 치료권 침해가 우려됨.

|              |
|--------------|
| 문 의 처        |
| 02)6788-5575 |